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
제271회 제1차 정례회

대구광역시달서구 통·반 설치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【의원 발의】

검토보고서



2020. 6. .

기획행정위원회
전문위원회

대구광역시달서구 통·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2020. 6. 9.
기획행정위원회

1. 검토과정

- 안건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통·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발의일자: 2020. 5. 22.
- 발의자: 김귀화 의원 외 4명(이신자, 이성순, 박정환, 김인호)
- 회부일자: 2020. 5. 28.
- 검토기간: 2020. 5. 29. ~ 6. 3.(4일간)

2. 개정이유

-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에도 해당 통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통장으로 우선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각종 사건·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,
- 또한 법령위반, 품위손상 등 중대 사안에 대해 통장의 해촉 기준을 강화하여 통장으로서의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.

3. 주요 개정내용

-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은 두 차례 이상 공개모집 후에도 통장으로 선정자가 없을 경우에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도록 규정(안 제5조제2항제2호)
- 통장의 해촉기준 강화(안 제5조제4항제4호)

4. 참고사항(관련법령 등)

-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「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- 비용추계서: 해당사항 없음
- 입법예고(2020. 5. 22 ~ 6. 1)결과: 주민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통장의 위·해촉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,
- 검토결과
 - 안 제5조제2항제2호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의 특수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“두 차례 이상 공개모집 후 선정자가 없을 경우에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” 개정함으로써 영구임대아파트 주민이 우선적으로 해당 통 관할구역의 통장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한 것이며,
 - 또한 안 제5조제4항제4호의 통장 해촉기준에 있어,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금고형(공직선거법 위반은 경고)이상의 처분 또는 처벌이 아니더라도 사회적 물의나 지탄 여부에 따라 해촉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통장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, 별첨 집행부의 검토 의견(현행 조례를 그대로 유지)을 참고하여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<이상 검토보고를 마침>

【 관 계 법령 】

□ 지방자치법

제4조의2(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 등의 명칭과 구역) ① ~ ④ 생략
⑤ 행정동·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.

□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23조(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)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이 접수된 날부터 30일이 지났으나 처리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민원인의 명시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리진행상황과 처리완료 예정일 등을 적은 문서를 민원인에게 교부하거나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민원이 접수된 날부터 30일이 지날 때마다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에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민원의 처리진행상황 등이 공개될 것임을 사전에 안내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.

□ 대구광역시달서구 통·반 설치 조례

제5조(통장의 위촉 및 해촉) ① 통에 통장을 둔다. (개정 2011. 3. 2)
② 통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촉한다. (개정 2011. 3. 2, 2012. 12. 3, 2014. 9. 22)
1. 통장은 해당 통 관할구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30세 이상의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.
2. 제1호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및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은 거주지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, 신개발 지역에는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도 위촉할 수 있다.
3. 동장은 통장 중 제4항에 따라 해촉되었던 사람을 위촉하여서는 아니

된다. 다만, 제4항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4. 통장 지원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, 통장 위촉 및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③ 통장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(개정 2011. 3. 2, 2014. 9. 22)

1.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통장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2.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임까지 임기를 모두 마친 통장은 해촉 된 날부터 기간에 관계없이 같은 통관할 구역에서 다시 통장으로 위촉을 할 수 없다. 다만, 통장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3.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기만료일에 도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인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, 7월에서 12월 사이인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를 임기로 본다.

④ 통장은 통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하여야 한다. (개정 2011. 3. 2)

1. 본인 스스로 사직을 희망할 때

2. 해당 통관할구역에 실제 거주를 하지 아니할 때

3.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

4.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「공직선거법」을 위반하여 경고 이상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때와 품위손상 등으로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때

5. 통의 통·폐합 등 구역조정이 있을 때

6. 그 밖의 사유로 통장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

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통·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」 -

검토 의견서

1. 발의연월일: 2020. 5. 22.

2. 발의자 : 김귀화 의원 등 5명

3. 제안이유

-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에도 해당 통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통장으로 우선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각종 사건·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,
- 또한 법령위반, 품위손상 등 중대 사안에 대해 통장의 해촉기준을 강화하여 통장으로서의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은 두 차례 이상 공개모집 후에도 통장으로 선정자가 없을 경우에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도록 규정(안 제5조제2항 제2호)
- 통장의 해촉기준 강화(안 제5조제4항제4호)

5. 참고사항(관계 법령 및 현행 조례)

-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3조
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통·반 설치 조례」

6. 검토의견

- 통장 위촉 시 해당 통 관할 구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격을 갖춘 통장 지원자가 없을 경우
- 예외적으로 산업단지와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은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는 조례내용을

- ‘산업단지’ 용어를 ‘공단지역’으로 수정하고
 -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은 2회 이상 공개모집 후에도 선정자가 없는 경우에만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였음
- 또한, 통장의 해촉기준을 법령위반, 품위손상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경우로 수정하였는데
- 개정 조례안은 기존 조례 내용과 의미가 같아 법규 적용상 큰 차이가 없어 기존 조례를 그대로 유지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.